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5.1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586호, 2020. 5.19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·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연혁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연혁

- 1. "야간"이란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.
- 2. "휴일"이란 토요일 및 「 \underline{v}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$\underline{M2}$ 조 및 $\underline{M3}$ 조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- 3. "일차의료"란 「<u>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 제1호</u>에 따른 보건의료를 말한다.
- 4. "일차의료서비스"란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「<u>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 제2호</u>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.
- 5. "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목에 따른 공공 야간·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.
- 가. "공공 야간·휴일 의료기관"이란 서울시에 개설·등록된 「<u>의료법」제3조제2항 제1호가목</u>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나. "공공 야간·휴일 약국"이란 「<u>약사법</u>」 <u>제2조 제3호</u>에 따른 약국으로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야간·휴일에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연혁

② 시장은 공공 야간 · 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정 등) ① 시장은 야간·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[연혁]

- ② 시장은 공공 야간 · 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공공 야간 · 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기관의 의무)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[연혁

제6조(정보망 구축) 시장은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수집과 관리,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[연혁]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면혁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- 1.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 기본계획 심의
- 2. 공공 야간 · 휴일 일차의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시장이 공공 야간 · 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연혁
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
- 2.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
- 3.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
- 4.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·휴일 일차의료 담당부서의 장
- 5.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
- ③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를 따른다.

제9조(보조금관리)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 를 따른다. [연혁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연혁

부칙 < 제7586호,2020. 5. 19.>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장이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중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본다.